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이전가격

중국의 일방 APA 간소화 절차

2021년 7월 26일 중국 국가세무총국(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일방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 간소화 절차에 대한 최종 지침인 공고 24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공고 24호는 일방 APA 간소화 절차 적용에 관한 주제로 이전가격 위험 감소와 조세 확실성 강화를 위한 세부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방 APA 간소화 절차는 2021년 3월에 발의되었습니다. 간소화 절차가 확정됨에 따라 지침 초안은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삼정 KPMG TAX 6 본부

17 Aug 2021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el: 02-2112-7939)

- 동기화 보고서 제출 시기 및 적용 요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전년대비 중대한 사업변경이 발생한 기업들도 일방 APA 간소화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변경이 발생한 성실납세기업들의 APA 신청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최종 지침에 의하면 간소화 절차는 단일 과세관할 지역(province or region)에 대한 일방 APA에만 적용되며 다수 지역에 대한 일방 APA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소화 절차는 성실납세기업(*)들을 위한 절차이며 공고 24호는 다른 지침들과 더불어 기업들에게 이전가격 동기화 문서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신고서 등 세무자료 구비 등 법인세법에 대한 엄격한 이행 준수를 요구합니다.
- (*) 성실납세기업:** APA 신청기간 직전 3개 과세연도 동안 매년 관련거래금액이 40백만 위안을 초과하며, 다음 3가지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1. 간소화 절차 신청 최소 3개월 전, 최근 3개 과세연도에 대한 동기화 정보관리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2. 과거 10개 과세연도동안 APA가 시행 및 준수된 경우
 3. 과거 10년 과세연도 이내 세무당국의 특별 세무조사 및 조정 대상이었으며, 해당 조사건이 종결된 경우
- 간소화 절차는 세무당국의 주요 절차 검토 및 완료 기한을 지정하여 APA 신청일부터 APA 승인일까지의 진행기간을 단축시킵니다.
 - 보편적으로 일반 APA 절차는 사전 미팅, 조율 및 승인 신청, 분석 및 평가, 공식 적용, 조율 및 승인, 관리감독 등 총 여섯 단계에 걸쳐 진행되지만 간소화 절차는 세 단계로 편성됩니다. 간소화된 절차는 APA 검토 또한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으며 세무당국이 행하는 APA 신청서 수락 평가 및 조율 과정에 대한 마감기한도 정해지게 됩니다. 공고 24호에 기재된 필수요건에 의하면 간소화 절차는 9~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간소화 절차는 기업들이 세무당국과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협조에 불응하는 기업들에게는 기능위험과 관련하여 현장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고 24호와 함께 발행된 자료에 의하면 APA 간소화 절차는 원가분담약정에도 적용됩니다.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 해당 자료에 따르면 양측 당사자들이 APA 간소화 절차를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공고 64호에 의거하여 기업들은 APA 신청 시 간소화 절차를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일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네덜란드: 이전가격에 대한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의 판결문

네덜란드 소재 유럽 사업운영 Nike/Converse社에 대한 판례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2021년 7월 14일 네덜란드 세무당국(Dutch tax administration)이 발표한 조세 판결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EC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2021년 7월 14일 일반법원의 발행물에 미국 최종모회사가 보유한 네덜란드 소재 자회사에게 네덜란드 세무당국이 내린 조세 판결 건이 실렸습니다.

네덜란드 세무당국의 조세 판결은 지적재산권 사용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과세되지 않는) 다른 그룹사에 지급되는 로열티 수수료의 수준과 관련한 이전가격거래를 검증했습니다. 로열티 수수료의 경우 네덜란드 소재 자회사의 과세소득 공제대상 비용이었습니다.

EC의 사전 심사에 따르면, 이번 조세 판결의 경우 납세 자회사에 대한 법인 소득세가 세무 목적으로 그룹 내 특수관계거래에서 책정된 정상가격 보다 낮은 연간 이익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선택적 이점(selective advantage)을 부여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로열티 금액은 독립 기업간 비교가능거래에서 협상되었을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EC는 불법적인 국가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회사들은 EU 일반법원에 해당 공식 조사 결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일반법원은 납세 자회사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일반법원은 이번 조세 판결이 선언적 성격에 불과하며, 네덜란드에서 영업을 수행하거나 정상가격 원칙을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점에 따라 유관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일반법원은 EC가 조세 판결에 대한 수급자의 과세소득이 실제로 비교가능하고 자유로운

경쟁조건에서 영업을 하는 상황 내에서 비교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 일반법원은 특정 특수관계거래의 경우 조세 판결에 의한 일정 수준의 가격책정이 인정될 수 있지만, 해당 가격이 시장 상황에서 책정되었을 가격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 자회사는 EC가 논의하고 있는 사례와 유사한 약 98건의 조세 판결문과 납세자와 유사한 기업구조를 가진 약 700개의 회사의 사례를 사전 심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반법원은 EC가 공식적인 조사절차 개시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2018두54408, 2021.07.2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납세자승)

1) 사실관계

① 일본국 법인 마루베니 주식회사(Marubeni Corporation, 이하 '일본법인')는 2006년경부터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4. 12. 22. 이를 전부 매각하였음

② 원고인 강원풍력발전 주식회사는 2014. 3. 20.자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2014. 3. 24. 일본법인에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5%)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인 강릉세무서에 납부

③ 강릉세무서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서, 일본법인이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위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인 2014 사업연도 종료 직전 6월 동안, 즉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2014. 12. 22. 이 사건 주식을 전부 매각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항이 아니라 같은 항 (나)목의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2016. 10. 12. 원고에게 각 세율의 차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

2) 판단

① 한. 일 조세조약 제10조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지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정하고 있음. 여기서 한.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이익배당은 그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대한 것이므로 주식 소유 여부의 판단 시점도 배당결의의 대상이 되는 그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2) 한.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조항이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6월 이상 소유하도록 한 취지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배당 직전에 주식 소유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까지 일정기간 동안 주식 보유를 강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3) 한.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는 배당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이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 등의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인 2013 사업연도 종료 직전 6월 동안, 즉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는 한.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

③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 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3) 판결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 피고측 부담

3. 관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 2021-11 호/시행 2021. 6. 18](#)

1) 개정사유

2021년 1월 발표한 '외화 유동성 공급 및 관리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외국환거래 현실에 맞도록 거래당사자의 신고 및 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그간 규정상 해석이 불분명했던 조문의 문구를 명확화 함으로써 규정의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지급·수령 사전신고 및 부동산취득·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 (§5-3, §9-9, §9-40)

나. 비거주자의 국내 소송·조세·부동산거래 대리인을 통한 지급에 대해서는 제3자 지급 신고 예외 허용 (§5-10)

다. 거주자·비거주자가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해 인정된 거래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 허용 (§7-31, §7-32)

- 라. 거주자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증권금융 예치 의무화 (§7-34)
- 마. 외화증권 인수·매매·보유 등 투자실적에 대해 당초 분기별 보고에서 월별 보고로 강화 (§7-35)
- 바. '기타 자본거래'의 규율대상에서 사용대차 삭제 (§7-44)
- 아.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시 양도인의 변경보고 기한 완화 (§9-5)
- 자.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자료 중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관련 자료에 대한 관세청장의 접근 허용 (§10-12)

3) 주요 시사점

상기 바. 개정 관련하여, 기존에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使用)·수익(收益)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物件)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즉 사용대차 계약을 기초로 설비 등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다수의 업체 심사 사례에서 설비 또는 금형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해 수출입 하였음에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존재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인해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사용대차 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향후 외국환거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설비 또는 금형의 경우로서 사용대차 물품이 외국환거래규정 상 신고의무가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관세법 상 생산지원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을 통해 생산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동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하는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Privacy](#) | [Legal](#) | [Unsubscribe](#)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